

# 퇴직연금 유형 안내

kt·kt노동조합



“회사의 퇴직연금 유형을 보면 DB형(혼합형), DC형이 있는데,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?”

- ✓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직원에게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하며,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달라집니다.

## ➡ 퇴직연금 DB형·DC형 안내

### 퇴직연금이란?

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, 금융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맡겨서 퇴직급여를 운용, 관리하는 제도 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05.12.1 도입)

### 확정급여형(DB) 제도

가정: 월 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3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 
(매년 급여상승률 10%)



퇴직 시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 년수  
→ 퇴직급여: 121만원 X 3 = 363만원

### 확정기여형(DC) 제도

가정: 월 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3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 
(매년 급여상승률 10%, 운용수익 a)



→ 퇴직급여: 331만원 + a(운용수익)

구분	DB형(Defined Benefit)	DC형(Defined Contribution)
개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사가 직원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, 직원에게 정해진 퇴직급여 지급</li> <li>구)퇴직금제도와 운용방식 동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사가매년 연간 임금총액의1/12를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(매년중간정산개념)</li> <li>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상품을 직원이 직접선택운용</li> </ul>
퇴직급여 수준	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 년수	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
운용Risk	회사부담	개인 부담(운용손실 책임을 개인이 부담)
중도인출	불가능	법정요건 충족 시 가능 누적 운용 DC 금액 인출가능
제도전환	DC형 및 혼합형 전환 가능	DB형 및 혼합형 환원 불가능

※ 혼합형 : 전환일 기준 이전 퇴직급여 DC형, 이후 퇴직급여는 DB형으로 운영

## Q. 임금피크제 직원은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가요?

☞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임피제 이전보다 퇴직금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. DC형으로 변경 시 퇴직금 전액이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고, 추후 임피제 기간 동안 해당계좌로 연봉의 1/12만 큼 매년 새롭게 퇴직금이 입금되게 됩니다. (연중 6월,12월 2회에 한해 DB형 → DC형 전환 접수 신청 가능 \*추후공지예정)